

---

: 16-01-사무-12  
수 신 : 언론사 법조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이유진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전송일자 : 2016. 1. 26.(화)  
전송매수 : 총 2매

---

### 『보도자료』

## 국정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 2016년 1월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

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